경기도 공고 제2025-663호

2025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발전,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경기도지사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 및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
- O 추진근거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 인증대상 : 업력 3년 이상의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 인증규모: 11개사 (중소기업 10개사, 사회적경제조직 1개사), 재인증 병행
- 인증기준: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인증절차 : 사업공모 → 법위반조회 및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심의위원회
- O 인증혜택: 인증서 및 현판수여, 착한기업 상표 사용권, 인센티브 지원 등
- O 인증기간 :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2.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5. 3. 14.(금) ~ 4. 11.(금)

○ 선정규모 : 신규인증 11개사 및 재인증 병행

O 신청대상

- (신규인증) 업력 3년 이상의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1) 업력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2) 소재지 기준

- 본사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본점 소재지

- 공장 :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 공통사항: 공고일 현재 기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설치·운영 중이어야 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단체

O 신청 및 평가 제외대상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의한 법 위반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신청제외 업종 (p.6참조)

○ 선정절차



3.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www.egbiz.or.kr) 접수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 신청양식 : 경기기업비서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25. 3. 14.(금) ~ 4. 11.(금) 17시
- 제출방법 : 신청/요건/증빙서류 모두 각각의 PDF파일로 제출 ※ 파일병합금지
- ※ 자기평가표 운영실적별 증빙자료는 압축 후 업로드 (폴더명: 운영실적별 증빙자료_기업명.zip)
- ※ 폴더명 : 운영실적별 증빙자료_기업명.zip / 파일명 : (A-1)기업소개자료_기업명)
- ※ 한 항목에 여러 증빙 제출 시 파일 병합 금지 ((A-1)기업소개자료_기업명 / (A-1)외부공시_기업명)
- O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류		1류	*공고문 내 신청서식 활용 / 각 파일에 직인날인 후 PDF형	실으로 업로드 必
1	필 수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신청서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신청서	서식 1
2	필			서식 2
3	필			서식 3
_ 4	필			서식 4
_ 5	필			서식 5
_6	필	수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 6
2.	요건	검토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必	
_1	필	수	● 사업자등록증명	
_ 2	필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정서	
3	필		● 재무제표('22년~'23년) 및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4년)	
4	필	수		'22년~'24년 12월 귀속분
5	필			
6	필			
7	필	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2년~'24년 귀속분
_8	해당	시	● 공장등록증명	공장 요건 해당시 필수
_ 9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필수
	3. 7	ነ 산	점 증빙서류 ※ 관련 증빙서류 별첨 必	
			• CSR 온/오프라인 교육실적 (5시간 이상)	
			• 생활임금 협약사업 추진	
			•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양육자 교육 및 상담 참여실적	
			• 성과공유제 시스템 등록	'22.1.1. ~ 공고일 내 실적
해	당	당 시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OII	0		● 경기도 가족신와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기업	
			• 경기 임팩트유니콘 선정기업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참여실적	'22년 참여기업
			•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 우수기업	'23년~'24년 측정기업
			●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우수기업	'24년 참여기업

O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신규인증과 재인증의 제출서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요망
- 자기평가표에 기재한 증빙자료는 사업 신청 시 제출 필수
- 신청 이후 평가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요구될 수 있음

4. 인증기업 혜택

- ①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착한기업 상표 사용권(3년) 부여
- ②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신규인증에 한함
 - 지원한도 : 인증기간(3년)동안 최대 2,000만원
 - 연차별 지원한도 : 인증 1년차 최대 1,000만원 / 인증 2,3년차 최대 500만원
 - 지원내용 : 총 소요금액(VAT 제외)의 최대 80% 지원, 기업 최소 20% 자부담 ※ 예시 : 총사업비 1,250만원(VAT제외) = 지원금 1,000만원(80%) + 기업부담 250만원(20%)
 - 지원항목: 마케팅, 사업화, CSR(사회적책임경영) 분야

	추진과제	ס עוווסוד		
구분	단위사업명	지원내용		
	광고홍보 지원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홈페이지(국문, 외국어) 제작비 지원		
마케팅	카탈로그 제작지원	제품 카탈로그(국문, 외국어) 제작비 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 관련 비용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제작비 지원		
사업화	금형제작 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 관련 비용 지원		
	인증취득 지원	CSR 관련 인증취득 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회공헌 활동 비용 지원		
CSR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무실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		
	기타 CSR 지원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CSR 관련 비용 지원		

③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제공

구 분	가점 내용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0)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1점] 우수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2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2점]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2점]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신청 [+1점]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신청 [+1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신청 [+1점]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1점]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1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신청 [+1점]
경기테크노파크 (3)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신청 [+2점] ·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신청 [+1점] ·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2점]
경기신용보증재단 (1)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5점]
경기도주식회사 (1)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1점]

5. 유의사항

O (법 위반 사실 조회)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적용되는 공정·노동·환경·납세 분야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개별 통보하며, 사실관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 제출기회 부여

<대상 분야 및 관련 법령>					
(공정)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노동)	④ 근로기준법	5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6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8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O (법위반 기업 사업 참여 제한조건)

- 관련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기업이 제출한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서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결정 취소·반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 (선정·지원 제외) 아래 항목 해당 시 선정 및 지원 취소 가능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 있는 경우
- 당해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된 기업
- 평가 및 지원절차에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해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 사유가 정당치 않은 지원사업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신청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55102 55103 55104 55909 56111 56121 56122 56123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민반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부동산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68224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129 56130 56141 56142 56150 56161 56162 56191 56199 56211 56212 56213 56219 56221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이동 음식점업 제과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커피 전문점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의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9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상기 외에도 진흥원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신청 및 지원 제외 가능

O (인증취소) 아래 항목 해당 시 인증기간 중 인증 취소 가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착한기업 인증을 취득한 경우
- 불법 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 착한기업 인증 이후 노동, 환경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착한기업 인증 지정 후 인증기간 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 착한기업 인증 지정 후 사회적 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기업 및 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전액 환수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업비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허위 서류 제출 등
 - 형사고발 : 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 향후 지원배제 : 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 : 타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 가능
- (기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화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ESG지원팀

사업문의	김유정 대리	031-259-6286	good@gbsa.or.kr
전산문의	경기기업비서 전산담당자	031-259-6299	-

※ 접수기간 중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